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취약계층에 아동·청소년 포함〉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06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공지능취약계층에 아동·청소년 포함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6. 6. 22.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과 피해 예방·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공지능취약계층에 아동·청소년 포함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인공지능취약계층’에 아동·청소년을 추가하고(안 제3조제5항),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 ----- ----- <u>견</u> <u>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u> <u>필요한 아동·청소년·장애인·</u> <u>고령자</u> ----- ----- -----

현행	개정안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③ ~ ⑦ (생략)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u> 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¹⁾을 인공지능취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약계층으로 정의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 추진 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참여 보장 및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 그리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²⁾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³⁾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의 활용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이 보다 빈번하게 인공지능 기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5 언론수용자 조사’ 및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1주일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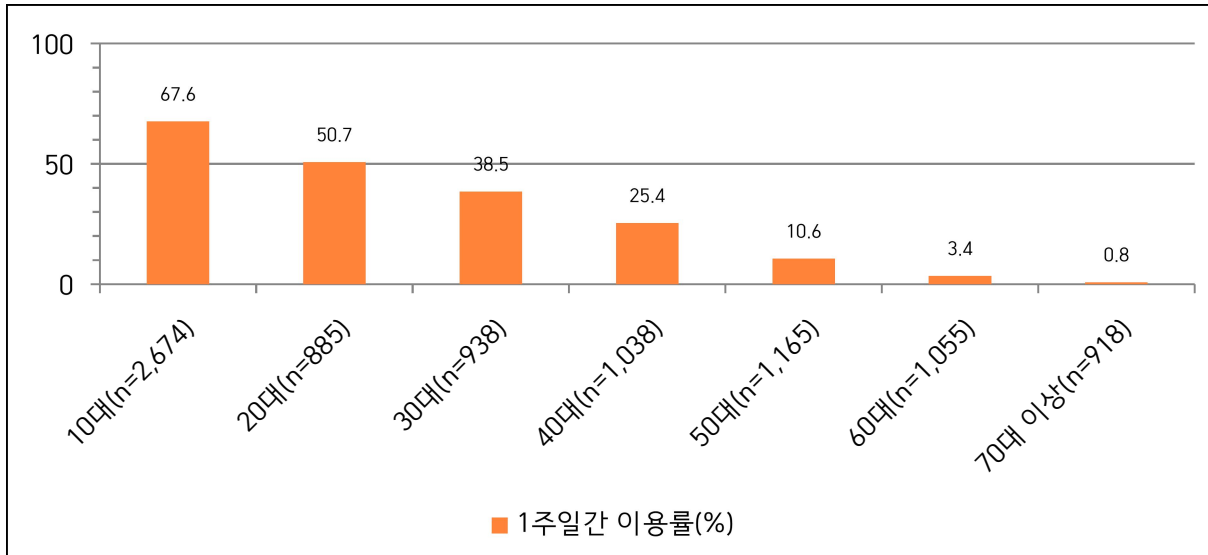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3)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율은 10대 청소년이 67.6%로 가장 높고, 20대가 50.7%, 30대가 38.5%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률이 낮아짐.

<연령대별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률>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언론수용자 조사> 및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인공지능에 대한 과의존 현상이 나타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를 단지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접근·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이나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 사항을 반영·포함시키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을 향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는 인공지능취약계층은 ① 현행법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층과 ② 인공지능제품·서비스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으로 이루어짐.
- 그런데, 두 집단의 취약성의 원인이 상이하고 정부가 대처해야 할 방향이 크게 달라서 이를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즉, 장애인·고령층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한 취지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반면,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무분별한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이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따라서, 장애인·고령층은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대상이고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이용과 위험 예방을 위한 보호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집단은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 정책목적과 규율방식이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단일한 개념인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묶어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 예컨대, 현행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접근·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정책적 목적이 아니며 개정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둘째,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은 현행 규정상 '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셋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6년 7월 2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수용

-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라 아동·청소년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이용자에 대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 취약계층 보호

를 위해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장애인·고령자 등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인 AI 취약계층과 “AI 이용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그 성격이 다른 만큼, 아동·청소년을 AI 취약계층에 포함시키기 보다, AI 기본계획 수립 시, AI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면, 동 법안의 개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수용

- 생성형 AI가 아동·청소년에게 학습도우미, 상담자 등 일상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정서적 의존, 과몰입, 허위정보 수용, 개인정보 침해 등 새로운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안전한 AI 이용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230